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1(목) 10:00

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기입 및 지원 조례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기입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272호

나. 제 출 자 : 이인식의워

다. 제출일자 : 2022. 11. 10.

라. 회부일자 : 2022. 11. 10.

2. 제안이유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 사고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보험 가입(안 제3조)
- 다. 보험회사의 선정 및 보험료 납부(안 제4조 및 제5조)
- 라. 보험금 청구(안 제7조)
- 마. 보험금 지원 제외(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촉진 법률」제4조 「지방자치법」제13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5. 검토의견

가.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대해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1) 안 제2조(정의)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의 규정을 인용하여 사용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안 제3조(보험 가입)

- 안 제3조는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안 제4조~제7조(보험회사의 선정, 보험료 납부・보장기준・청구)

-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보험의 보장기준,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 하여 장애인등의 보험 지원에 따른 내용을 구성함.

4) 안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 구청장이 전동보장구 보험 체결에 따른 보험증권 확인 및 관리 사항의 확인 규정을 명시함.

다. 검토의견

○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고령화와 장애인구 증가로 인해 전동 보장구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에도 장애인등의 사용자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장애인 전동보장구 필요 및 소지 현황>

필요 및	전동보장구 종류별	2014		2017		2020	
		비율(%)	추정수	비율(%)	추정수	비율(%)	추정수
			(명)		(명)		(명)
필요	전동휠체어	9.5	154,581	8.5	131,512	9.1	133,193
	전동스쿠터	6.7	109,249	6.2	96,152	5.0	73,094
소지	전동휠체어	3.7	59,748	4.1	63,015	6.1	90,037
	전동스쿠터	3.2	52,456	2.6	39,578	3.6	52,510

자료 : 통계청 : 국가통계포털

○ 현재 우리 구의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약 450명으로 추정(기초수급자 180명, 공단급여 270명)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 등록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공단 고시가격의 90% 지원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 기준금액 100% 지원
 - ※ 우리구 대상자 450여명 추정(기초수급자 180명, 공단급여 270명)
 - ※ 노인, 국가유공자의 전동보장구 이용에 대한 통계자료 없음

- 본 조례안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증가 및 불편한 보행환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장애인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자의 안전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2022. 10. 15제정)가 이미 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과 보험 보장 등에 있어 중복 지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타 자치단체 제정현황: 5개 자치단체[서울시 조례 없음]

- ▶ 최초 제정 : 대전광역시 유성구(2020.12.)
- ▶ 양천구('21.7.), 노원구('21.11.), 경기 하남시('21.11.), 충남 보령시('21.12.)
- ▶ 입법예고 중 : 세종특별시 자치시, 서울시 관악구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30.] [법률 제14891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